

감사 결과(산업기술시험원 직원 겸직 관련)

1. 감사개요

☐ 감사배경

- 감사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겸직허가관련 감사 제보(원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활동)건을 우리부에 이첩하여 감사 실시

☐ 감사 기간 : '25. 3. 31.~ 4. 11.(10일간)

☐ 처분요구일 : '25. 5. 9.

2. 감사결과

- [정당활동] ▲▲▲는 '98년 △△당 당원가입 이후 '20년부터 ○○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하였고, '24.12월 임기만료로 사직(현재는 당원 신분만 유지)

- 정당활동은 화상회의 및 행사 등에 참석하였지만 근무시간중에는 참석하지 않았고, 대가(급여)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

- [겸직허가 대상 업무 여부] ▲▲▲가 시험원 직원이면서 △△당 ○○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겸하는 것은 겸직허가가 필요한 사항*

* [대외활동운영세칙 제8조 제1항] ④ 기타 명백하게 계속성이 있는 시험원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 사전에 겸직 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

- [임직원의 겸직제한 위반] ▲▲▲는 원장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, '15.9월 원장 허가없이 정당활동을 하여 '경고'처분 받고도 '24.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당활동을 하여 정관 등 내부규정 위반

3. 조치내용

- 원장 허가없이 비영리업무를 한 ▲▲▲에게 “징계 요구” 및 겸직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“주의 요구”